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1431호

2026년 8월 18일(화)

- 차 례 -

조 례

제2979호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1
제2980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제2981호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2982호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18
제2983호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23
제2984호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규 칙

제1579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3
--------	----------------------------	------

입 법 예 고

제2026-33호	강화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87
-----------	--------------------------	------

고 시

제2026-1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불은면 두운리 일원 - 92 보행환경 개선공사)
제2026-179호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불음도 관광기반 - 124 연결도로(군도19호선) 확포장공사]

공 고

제2026-1237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128
-------------	---------------------	-------

조례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가.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강화군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나.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을 위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제2조)
나. 강화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사항(제3조)
다. 강화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제7조)
라. 적극행정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 및 포상(제8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9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79호

붙임: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79호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감사법무담당관을 포함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 군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1급·2급·3급 관사의 통합 운영, 관사 운영비 등의 자부담 원칙 준수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부료율 근거 규정 신설(제28조)

나.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 신설(제32조)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급상승 시 감액 대상 확대(제34조)

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 확대(제35조)

마. 단체장 관사 폐지 및 1·2·3급 관사 통합 운영(제51조)

바.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제56조)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9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80호

붙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80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관리사무의 위임)”을 “(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처분에 관한”을 “관리·처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5호의 사항”을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취득·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직 위원 각”을 “민간위원 각”으로, “위촉직 위원인”을 “민간위원인”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을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제3항 본문 중 “개의회고”를 “개의회(開議)하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공유재산의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관리대장”을 “대장(臺帳)”으로 한다.

제7조 중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을 “현황 등을”로,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있는지의 여부”를 “있는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필요한”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장”을 “대장”으로, “대부시”를 “대부 시”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를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내의”를 “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를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로 한다.

제9조 중 “절감하여야”를 “줄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리계획”을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를 “확정되거나 변동된 경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용허가 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대하여 아무런”을 “아무런”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찰”을 “일반입찰”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하여 사용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해 관계”를 “위하여 관계”로, “대하여 사용허가하

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호 중 “지역대표 특산품”을 “지역특산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연간사용료·납부방법”을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을 “관리위탁을 받”으로, “전대”를 “전대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비용은 전대 받”을 “관리비용을 전대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료되는”을 “끝나는”으로,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갱신 신청을 하여야”를 “갱신을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사회에 대한”을 “지역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위탁기간의”를 “관리위탁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태만히”를 “소홀히”로, “해지하고”를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하여 사실상”을 “사실상”으로 한다.

제27조제2호 중 “내의”를 “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단지안”을 “산업단지 안”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2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관련”을 “지원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이전하는”을 “이전(移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역내”를 “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버섯류 산나물류”를 “버섯류·산나물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중 “사용 허가된”을 “사용허가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원석시가라 함은”을 “원석시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단체”를 “관련 단체”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전용”을 “전용(專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해당건물”을 “해당 건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부지”를 “해당 부지”로, “내”를 “안”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34조 중 “등이”를 “등보다”로, “이상 증가하여”를 “이상”으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차연도 부터”를 “2차연도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중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힘써야”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 제1항”을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의 필요에 따라”를 “군이 필요하여”로, “계약시”를 “계약 시”로, “재산 명도일”을 “재산명도일”로 한다.

1의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를 “인건비,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내의”를 “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식산업센터내”를 “지식산업센터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투자지역내”를 “투자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용지내”를 “용지 안”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계약에 따르”를 “수의계약으로 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폐도·폐구거·폐제방”을 “폐도·폐구거(폐도랑)·폐제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시설 부지상”을 “산업시설부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동 건물바닥면적”을 “그 건물 바닥면적”으로, “동 건물의”를 “그

건물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본”을 “이”로 한다.

제42조 중 “이바지”를 “기여”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도피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를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이상을”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형설계”를 “외형 설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청사주변”을 “청사 주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관련”을 “직무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상”을 “별표”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종합 청사화”를 “종합청사화”로 한다.

제50조 중 “군수·부군수, 군 소속직원”을 “부군수, 군 소속 직원”으로, “위하여 소유하는”을 “위하여 소유(또는 임차)하는”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커튼,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관리비 등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을 “군수는 관사의 사용이”로 한다.

제58조 중 “등재 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산”을 “정산(精算)”으로 한다.

제60조 중 “사용도중”을 “사용 도중”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에 대한”을 “징수”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분납”을 각각 “분할납부”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닉 재산”을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허위서류”를 “거짓서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닉 재산”을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있으며 신고인이 2인”을 “있으며, 신고인이 2명”으로, “지급 대상”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을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인의”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제1조, 제12조제3항)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8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81호

붙임: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81호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장애·질병·사고”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강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공고 절차 규정(제5조)
- 나. 현장 표지 설치 및 군민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홍보(제6조)
- 다. 아동보호구역의 체계적 운영·관리(제7조)
- 라.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제8조)
- 마.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제9조)
- 바. 관계 기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제10조)
- 사. 업무 위탁 근거(제11조)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9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82호

붙임: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82호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등의 공고)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보호구역의 명칭
2. 위치 및 범위
3. 지정·변경·해제 사유 및 시행일
4. 관리 주체 및 문의처

③ 군수는 강화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현장 표시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어린이집·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운영·관리 사업)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법·안전시설(조명, 비상벨 등) 설치·정비
2. 강화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순찰 및 안전지도
3. 안전취약요소 개선
4. 아동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동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군수는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아동보호구역의 운영 개선 및 다음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장, 강화경찰서장 및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보호구역 안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지역상품을 홍보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지역상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1조~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 나. (제3~4조)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 (제5조) 적용대상 기관
- 라. (제6~8조) 지역상품 구매 촉진 및 권장
- 마. (제9조) 포상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8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83호

붙임: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83호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강화군의회

3.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법인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법인 등이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구매 촉진 시책)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이하 “구매 촉진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구매 촉진 시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을 포함한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구매 권장)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용역·공사·서비스 등에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개

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조례(공포)

1. 제 명: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며,

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 소상공인 경영 및 사업지원 내용 추가

나. (제7조) 지원대상 정비

다. (제10조) 소상공인위원회 비상설화 전환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9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조례 제2984호

붙임: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강화군 조례 제2984호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무에 대하여”를 “채무를”로, “신용보증기관”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소상공인에 대하여”를 “소상공인에게”로,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기 침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9.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10.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11.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
12. 소상공인 창업 예정자 지원

제6조의 제목 “(특례보증지원)”을 “(특례보증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보증기관”을 각각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두고 있고”를 “두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2호의 경우에는 군에서 창업하려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0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을 “정책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업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한 전문지식”을 “전문지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제척할 수 있다”를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로 한다.

④ 군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자문이 종료된 경우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회고”를 “개의회(開議)하고”로 한다.

① 위원장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 본문 중 “위원에게”를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규칙(공포)

1. 제 명: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 (현행) 소속 공무원 → (개정) 소속 직원(제34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026년 제8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규칙 제 1579 호

붙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강화군 규칙 제 1579 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군본청:”을 “강화군 본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회:”를 “강화군의회:”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실지”를 “실제”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연령”을 “나이”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를 “화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를 “정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을”을 “있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회계간”을 “회계 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밖의”를 “밖에”로 한

다.

제18조의 제목 “(등기수속 등)”을 “(등기절차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건축물 관리대장”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등기사항증명서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관리대장

제23조제2항 중 “매년말”을 “매년 말”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조례”를 “조례 제35조,”로, “공유재산사용료”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로 한다.

제31조 중 “토석가격평정조서”를 “채광물가격평정조서”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을 “(변상금의 사전 통지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전통지서”를 “사전 통지서”로, “사전통지에”를 “사전 통지에”로 한다.

제33조 중 “청사신축계획서”를 “청사 신축계획서”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51조에 따른 사용 대상 공무원”을 “제50조에 따른 사용 대상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 대상 공무원”을 “사용대상 소속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사관리대장”을 “관사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사 관리업무 담당과장”을 “관사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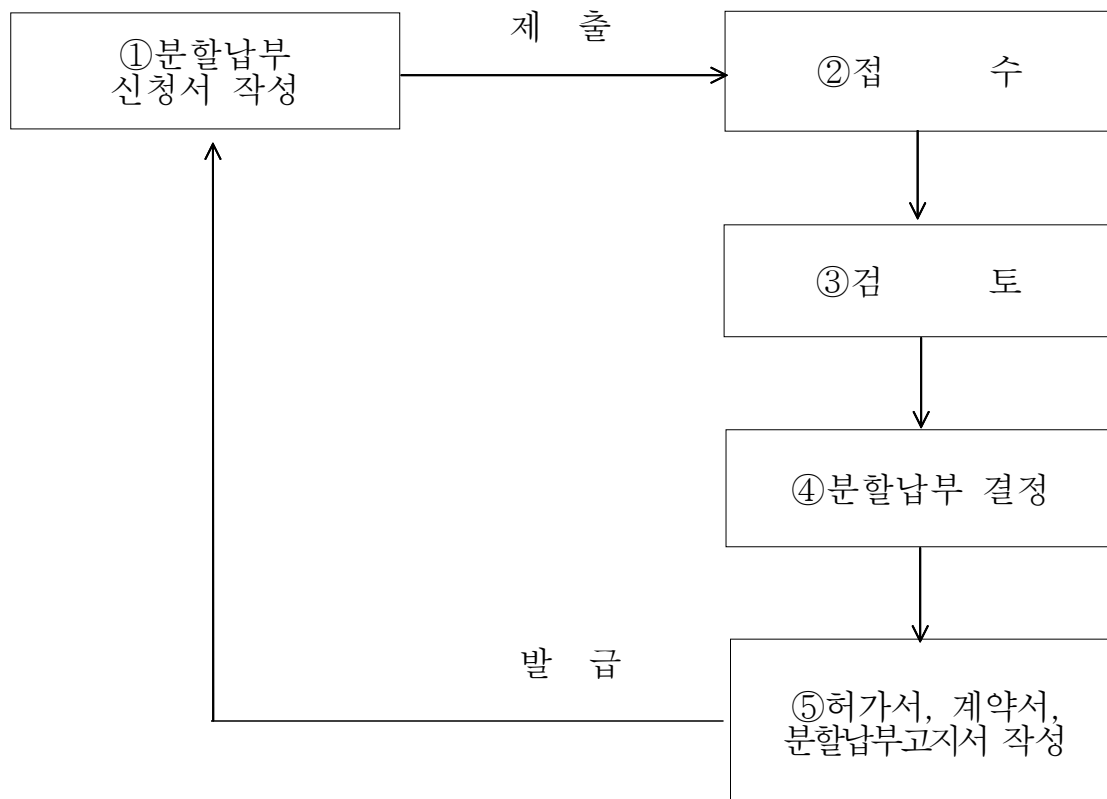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공유재산 [()사용료()매각대금 ()대부료()변 상 금]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 년 월 일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신청 사유	분납방법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 상 금]을(를) 나누어 내려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뒤쪽)

< 업무처리절차도 >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로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가입)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강화군이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래상태를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에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군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에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 재 지										군		읍면		리		번지	
물건 표시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번호				기 타	명칭			부속 사항		
		지목					종목					구조					
		면적	전	체	m ²		면적	전	체	m ²		형식					
			대부사용	m ²				대부사용	m ²				수량				
적 요																	
허가 번호	사용목적	계약 (갱신)년월일 허가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			시 군		동 읍 면		리			번지	
차수 물건	토지	지목			건 물	종목			부속 건물		
		지적	총면적	m ²		구조					
			차수면적	m ²		건평	전체	m ²			
							차수	m ²			
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적 요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 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채광물가격평정조서

[illegible]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일월년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 (주) 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 유상 대부계약서 [] 무상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강화군수(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따라 대부받는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1 개월 미만 일수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대부료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후의 연체료율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 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및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등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보험가입) 임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자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래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채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

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강 화 군 수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
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강화군수(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거짓 진술 또는 부실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이의결정)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 전부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강 화 군 수 (인)
(매수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강화군수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모든 공과금의 변제

제5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강화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알쪽)

[별지 제15호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단위: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m²,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 수 량						
1건	처 분 취 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²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m²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_____

(단위: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희장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 (2) 일단의 수량: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 (3) 매각대상수량: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 (4) 과표 또는 평가액: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 (5) 매각시기: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 (6) 매각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_____

(단위: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토 지)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작성 자		확 인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사항증명서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적도등본			
소재지 :								

지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사항		
	현 재 :				년도	내 용	금 액
	m ²						
	m ²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시가	시가 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액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건 물)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사항증명서	
		소분류			건축물관리대장	
		세분류			배 치 도	

소재지 :

연면적	취득시 : m ²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투자사항		
	현 재 : m ²				년도	내 용	금 액
건축 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 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적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공 작 물)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등기사항증명서	
		중분류			건축물관리대장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명 칭	구조형식	수 량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기 계 기 구)

작성
자

확
인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배 치 도	
		소분류						
세분류								

[illegible]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임 목 족)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사항증명서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수 종		용 도	연 혁	현 황 및 상 태	관 리 비 투 자 상 황
본 수		(본) 주			
식 재 상 황	년 월 일				
	본 수				
	면 적				
	식 재 자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수 량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임대연월일		등기년월일					
임대기간		등기번호		가 액			
		등기목적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선 박)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사항증명서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주요설비및속구		용 도		깊이	m	향해구역	
명 칭	개 수	선적항		넓이	m	최대탑승인원	
		등록년월일		길이	m	착수연월일	
		등록번호		속력		준공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사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공사항		비 고
년도	내용	금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

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종 류						부 속 서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		가 액								
사 용 자	주 소					사 용 목 적						
	성 명			전화번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신기간								
사 용 료		유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		감		현 재		기록	대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

재 산 관 리 관		취 득	연월일	방 법	금 액	소유자	작성 자		확 인	
종 목							부 속		연	
등 록 번 호							서 류		혁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대호	증감사유	증 가		감 소		현 재 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 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 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대부 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 소	성 명	내 용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

작성 자		확 인	
---------	--	--------	--

[illegible]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1면

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 자		확 인	
---------	--	--------	--

신탁종류		수 탁 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 재산 조성 및 취득 내역			현재 용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연월일	목 적	취득 당시 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강 화 군 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 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강화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화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재산은 강화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은 닻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면적 (수량)	현재 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된 군유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청사 신축계획서

- 작성자:
- 확인자:

1. 군 청사현황

①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	인 구 수	직 원 수	수 용 기 관		
	명	(정규)명			
③ 대 지	지 목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부속건물		
	건 평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①위 치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구조	㎡		구조				
③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재원계획		계		교부세		시 비		시·군비		청사매각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⑥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진 일정	추진 상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3호서식]

관사사용 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사용신청자 환경조사서

1. 성 명:
2. 강화군 최초 임용일자:
3. 임용 구분: 신규 / 전입 (해당사항에 ○표)
4. 관사 사용여부: 사용한 적 있음·없음
(해당사항에 ○표)

3. 주 소 지 :

4. 실제 거주지 주소:

5. 출·퇴근 환경

출.퇴근	전.월세	비 고

※ 해당란에 ○표

6. 출.퇴근 소요시간 및 수단(출.퇴근자만 해당)

□ 소요시간: 시간

↳ 교통수단: 자가·버스·기타()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 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화군수 귀하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넘긴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날짜에 틀림 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넘긴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관사사용포기서

1. 포기인: 직 급 성 명

2. 포기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 재 지	면 적(m ²)		비 고
			대 지	건 물	

3. 포기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직 급 성 명 (인)

강화군수 귀하

입법예고

강화군의회 공고 제2026 - 33호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강 화 군 의 회 의 장**1. 제정이유**

입법권 확대와 행정 수요에 맞춰 입법 자문 및 쟁송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법규의 완성도와 의정활동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법·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근거 마련과 의회
소관 적용 범위 명시(안 제1~2조)
- 나. 변호사 2명 이내 위촉 인원 및 임기 2년 명시(안 제3~4조)
- 다.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법령·자치법규 해석, 소송 수행의 직무 및
비밀·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조항 명시(안 제5조)

라. 강화군의 고문변호사 겸직 금지 및 의회와 이해충돌 사건의 상대방

대리 및 자문 금지 조항 명시(안 제6조)

마. 자문방법 명시(안 제8조)

바. 자문료 및 소송비용 조항 명시(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별도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032-930-3746, 팩스 032-930-3509,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서식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해당 조항	의견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의회 조례 제 호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위촉) ① 강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1. 개업 중인 변호사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② 의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경력, 전문성 및 법률사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2명 이내로 둔다.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및 비밀유지)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사무를 수행한다.

1. 의회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

2.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 관련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적용

3. 의회 또는 의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수행 및 법률자문

4. 그 밖에 의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강화군의 고문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고문변호사는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자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송 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

4. 변호사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5.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자문방법 등) ①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자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

다.

제9조(자문료 및 소송비용 지급)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강화군 고시 제2026 - 0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불은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일

강 화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군도	5호선	군도 5호선	불은면 오두리~ 불은면 삼성리	98,944.25	불은면 오두리	불은면 삼성리	불은면 두운리	7.9
변경	군도	5호선	군도 5호선	불은면 오두리~ 불은면 삼성리	101,676.25 (증 2,732)	불은면 오두리	불은면 삼성리	불은면 두운리	7.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인도 개설 “L=0.8km, B=2.0m, 사업면적: 3,515㎡”에 따른 추가 편입면적(2,732㎡) 반영
- 인도 개설 사업구간: 불은면 두운리 1067-8 ~ 1251번지 일원
[A=98,944.25㎡ → 101,676.25㎡, 증 2,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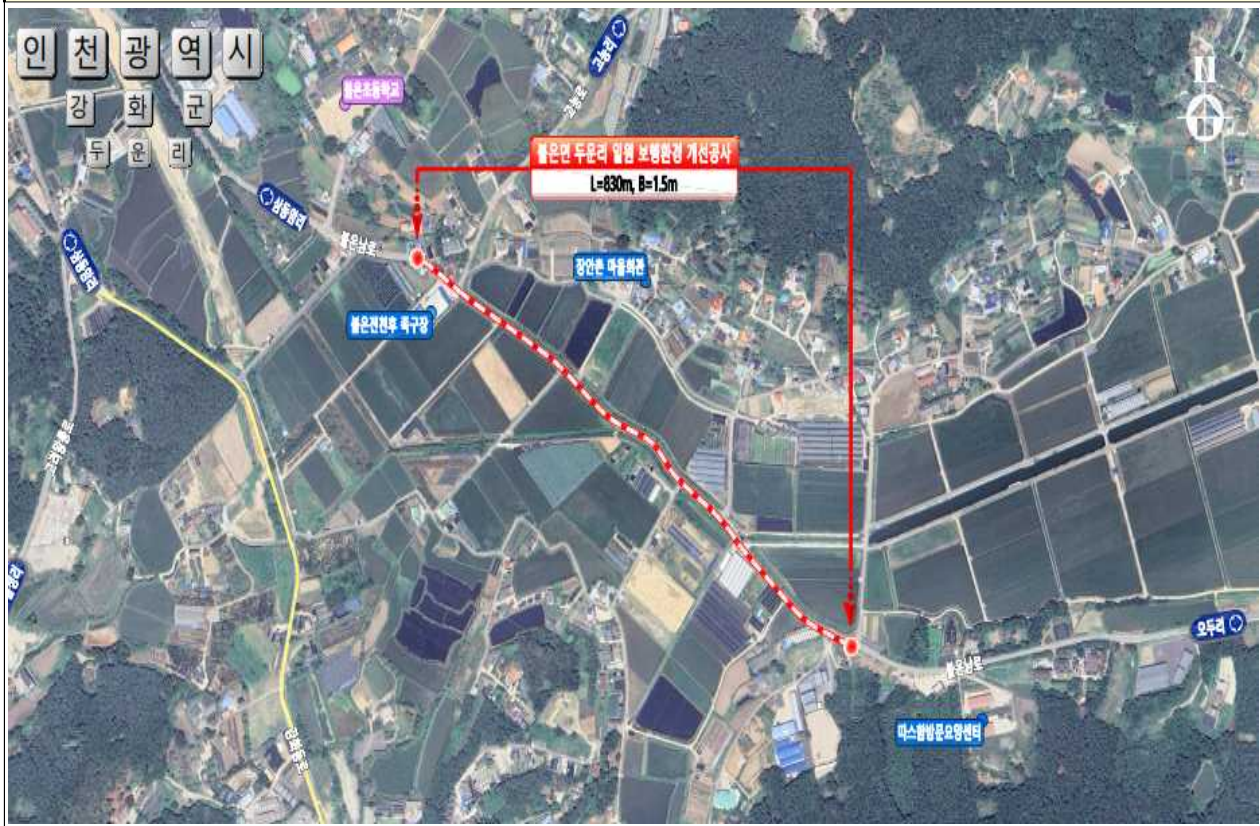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 2027.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고시일로부터 14일)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용지조서 등
------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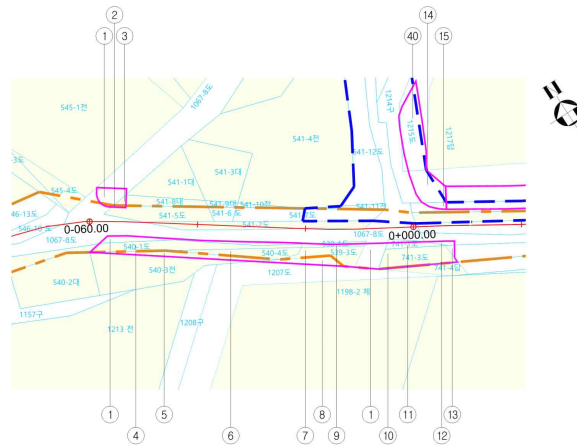


용 지 도 (1)

(전체분) S = 1 : 300(A1)
S = 1 : 600(A3)

범례

구분	명칭	비고
	도로용도구역(군도)	
	도로용도구역(농어촌)	
	연속지적도	
	관입용지경계	
	용지물대	
	사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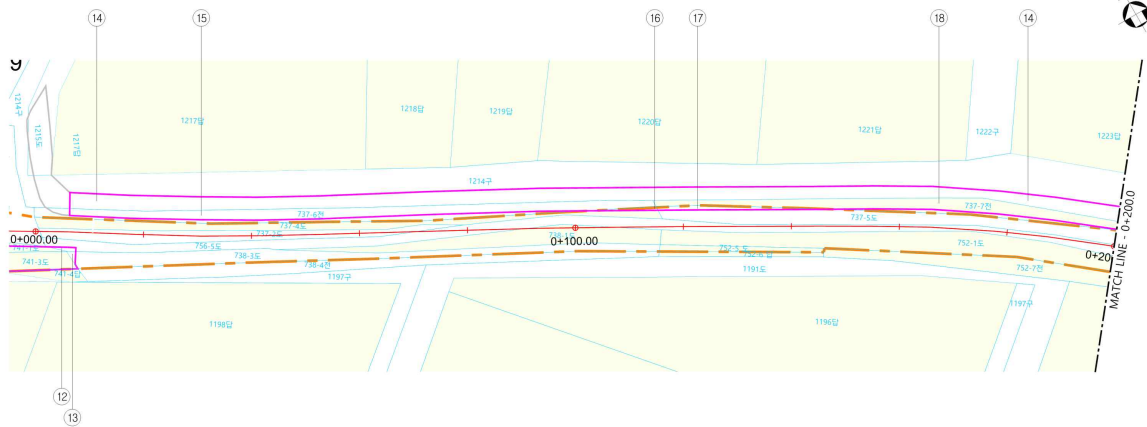


공 사 명	시 행 장	설 계 사	설 계 일자	축 척	조망제일지	분양제일지	자 실 계	도 면 명	도 면 번호
불문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불문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IMC (주) 아이엠씨엔지니어링	2026. 03	1 : 300 (A1) 1 : 600 (A3)	김민수	임동욱	정한영	용 지 도 (전체분) (1)	6.01

용 지 도 (2)

(전체분) S = 1 : 300(A1)
S = 1 : 600(A3)

구 분	명 칭	비 고
	도로용도구역(군도)	
	도로용도구역(농어촌)	
	연속지적도	
	관입용지경계	
	용지물대	
	사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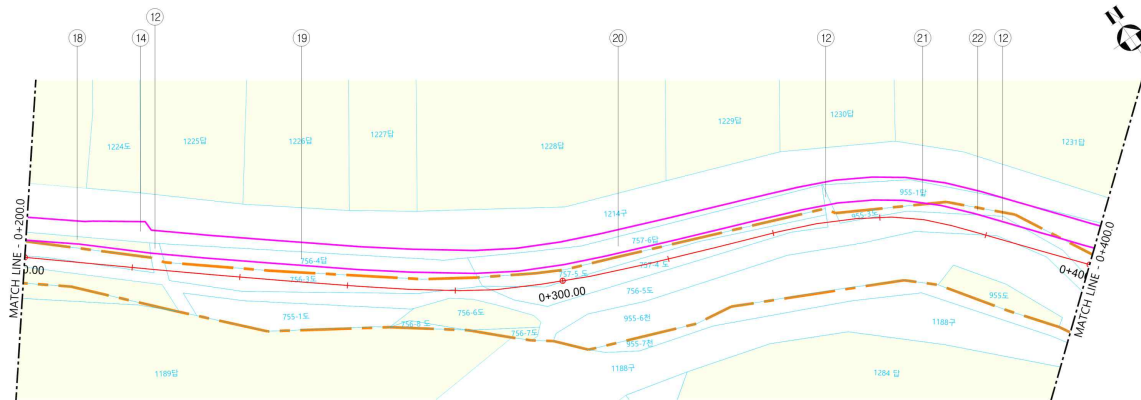


공 사 명	시 행 장	설 계 사	설 계 일자	축 척	조립책임자	분담책임자	자 실 계	도 면 명	도 면 번호
불문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민 천 경 역 시	(주) 아이엔씨엔지니어링	2026. 03	1 : 300 (A1) 1 : 600 (A3)	김 민 수	임 동 욱	정 한 영	용 지 도 (전체분) (2)	6.02

용 지 도 (3)

(전체분) S = 1 : 300(A1)
S = 1 : 600(A3)

범례		
구분	명칭	비고
	도로용도구역(군도)	
	도로용도구역(농어촌)	
	연속지적도	
	관입용지경계	
	용지물대	
	사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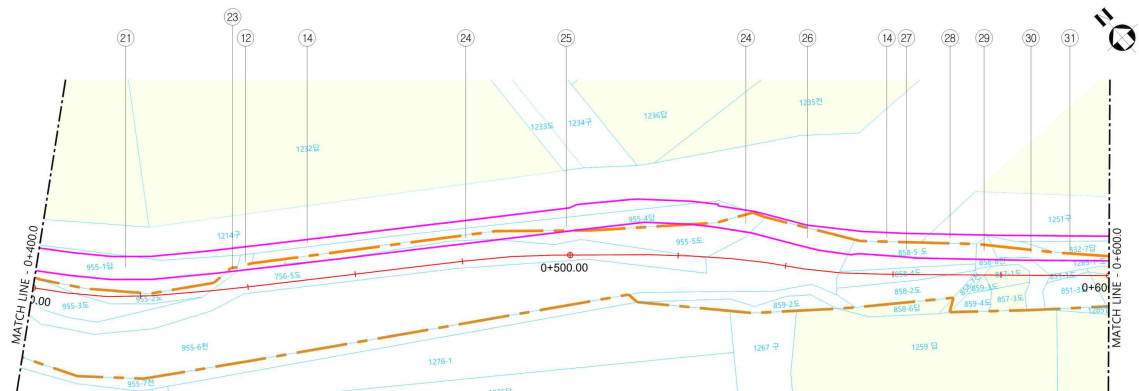


공 사 명	시 행 장	설 계 사	설 계 일자	축 척	조립책임자	분담책임자	자 실 계	도 면 명	도 면 번호
불문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IMC (주) 아이엔씨엔지니어링	2026. 03	1 : 300 (A1) 1 : 600 (A3)	김민수	원동욱	정한영	용 지 도 (전체분) (3)	6.03

용 지 도 (4)

(전체분) S = 1 : 300(A1)
S = 1 : 600(A3)

구 분	명 칭	비 고
—	도로용도구역(군도)	
—	도로용도구역(농어촌)	
—	연속지적도	
—	관입용지경계	
(0)	용지분대	
—	사 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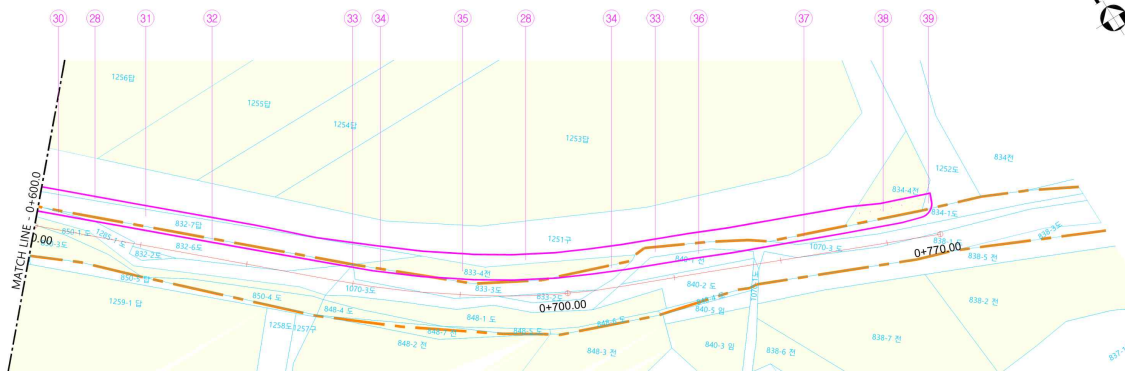


공 사 명	시 행 장	설 계 사	설 계 일자	축 척	표준계획지	분리계획지	자 실 계	도 면 명	도 면 번호
불문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불문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주) 아이엔씨엔지니어링	2026. 03	1 : 300 (A1) 1 : 600 (A3)	김민수	임동욱	정한영	용 지 도 (전체분) (4)	6.04

용 지 도 (5)

(전체분) S = 1 : 300(A1)
S = 1 : 600(A3)

구 분	명 칭	비 고
	도로용도구역(군도)	
	도로용도구역(농어촌)	
	연속지적도	
	관입용지경계	
(0)	용지물대	
	사 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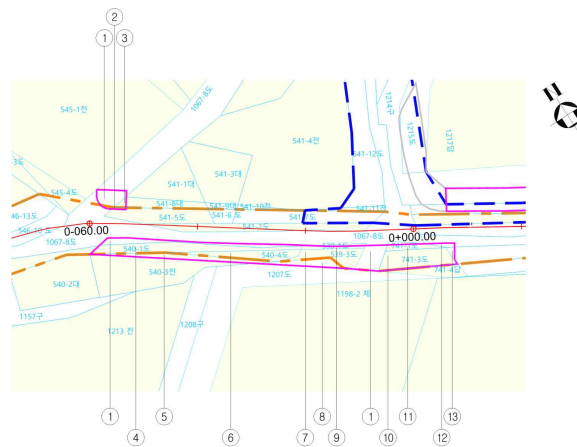
구 분	명 칭	시 설 명 칭	설 계 사	설 계 일 자	축 적	과 일 책임자	분리 책임자	분리	도 면 명	도 면 번 호
불문면 두물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인간환경보존	인간환경보존	이이엔씨엔지니어링	2026. 03	1 : 300 (A1) 1 : 600 (A3)	김민수	임동욱	정한영	용지도 (군도) (5)	6.05

용 지 도 (1)

(군도) S = 1 : 300(A1)
S = 1 : 600(A3)

범례

구분	명칭	비고
	도로용도구역(군도)	
	도로용도구역(농어촌)	
	연속지적도	
	관입용지경계	
	용지물대	
	사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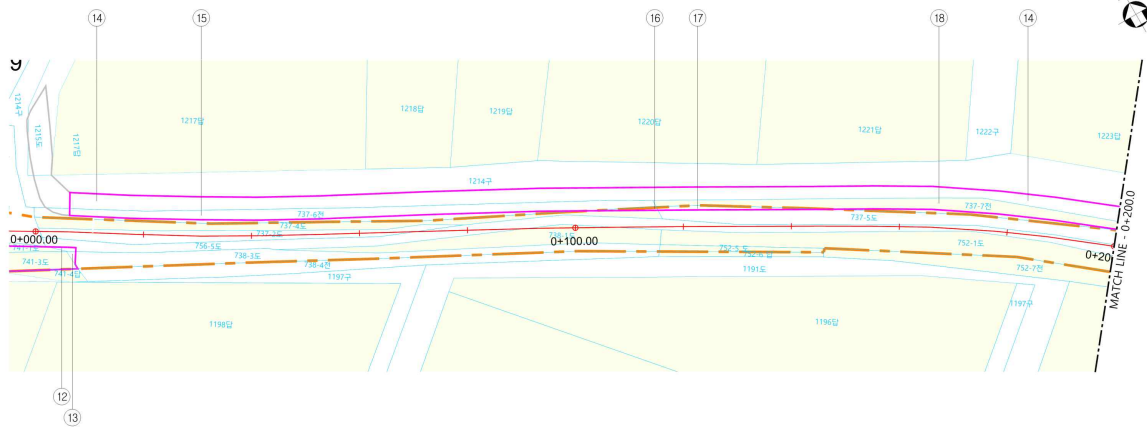


공 사 명	시 행 장	설 계 사	설 계 일자	축 척	조망제일지	분양제일지	자 실 계	도 면 명	도 면 번호
불문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군)인 천 광 역 시	(주) 아이엔씨엔지니어링	2026. 03	1 : 300 (A1) 1 : 600 (A3)	김민수	원동욱	정한영	용 지 도 (군도) (1)	6.06

용 지 도 (2)

(군도) S = 1 : 300(A1)
S = 1 : 600(A3)

구 분	명 칭	비 고
	도로용도구역(군도)	
	도로용도구역(농어촌)	
	연속지적도	
	관입용지경계	
	용지물대	
	사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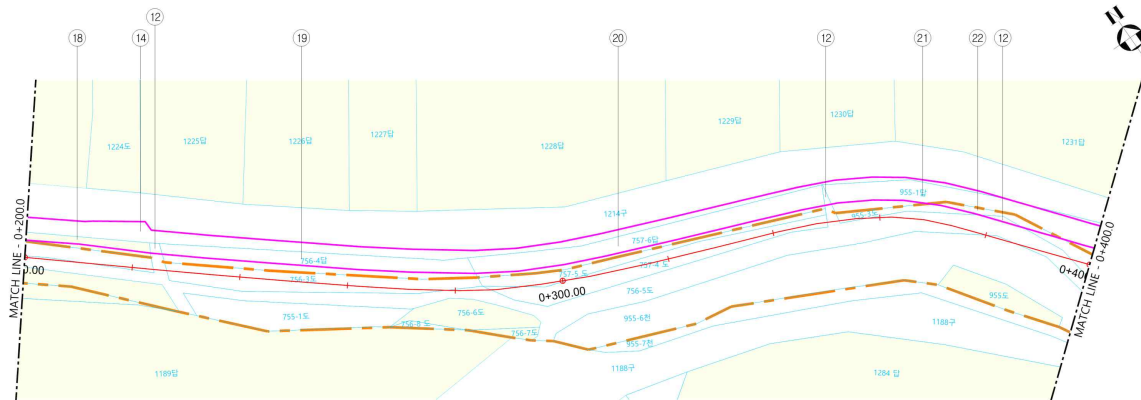


공 사 명	시 행 장	설 계 사	설 계 일자	축 척	조립책임자	분담책임자	자 실 계	도 면 명	도 면 번호
불문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이이엔씨엔지니어링 (주) 이이엔씨엔지니어링	2026. 03	1 : 300 (A1) 1 : 600 (A3)	김민수	원동욱	정한영	용 지 도 (군도) (2)	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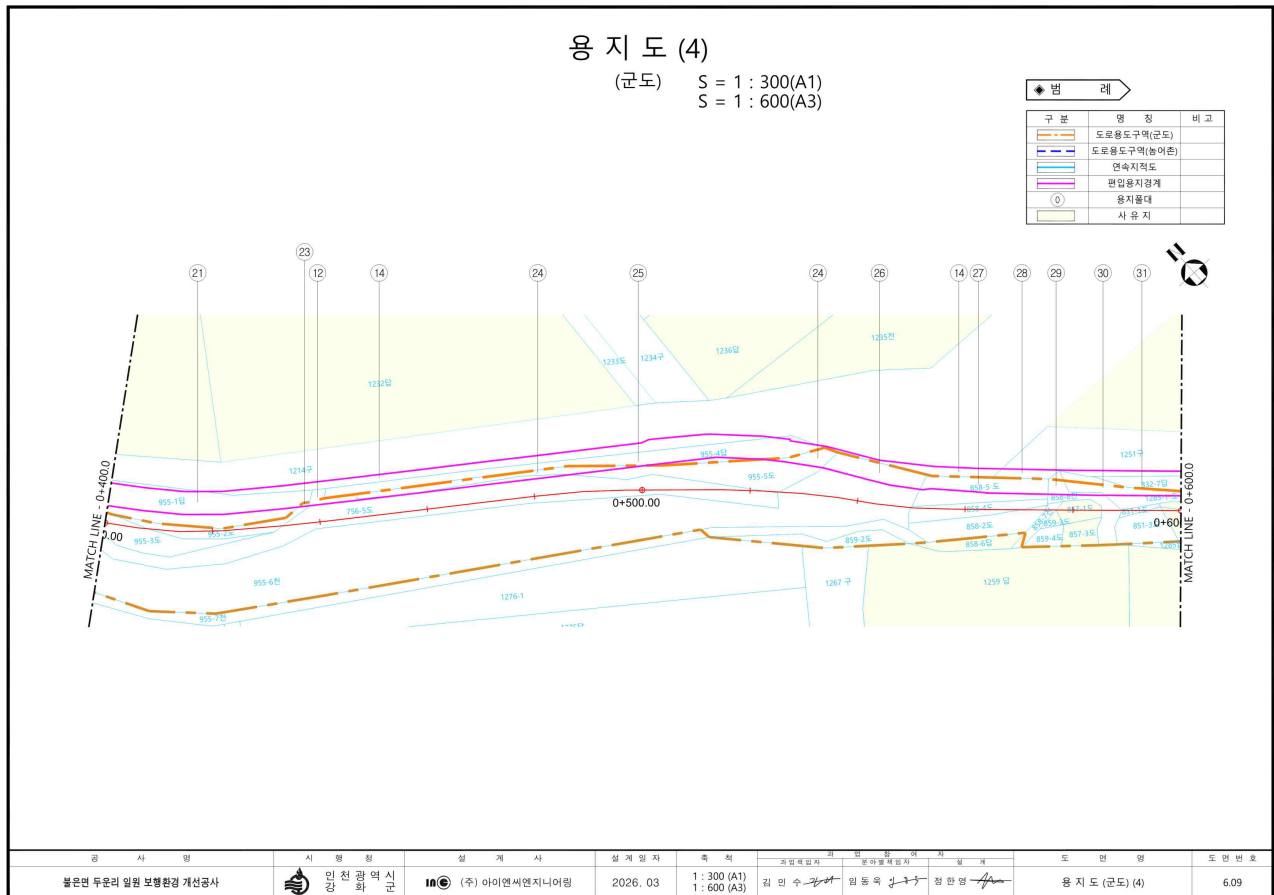
용 지 도 (3)

(군도) S = 1 : 300(A1)
S = 1 : 600(A3)

범례		
구분	명칭	비고
	도로용도구역(군도)	
	도로용도구역(농어촌)	
	연속지적도	
	관입용지경계	
	용지물대	
	사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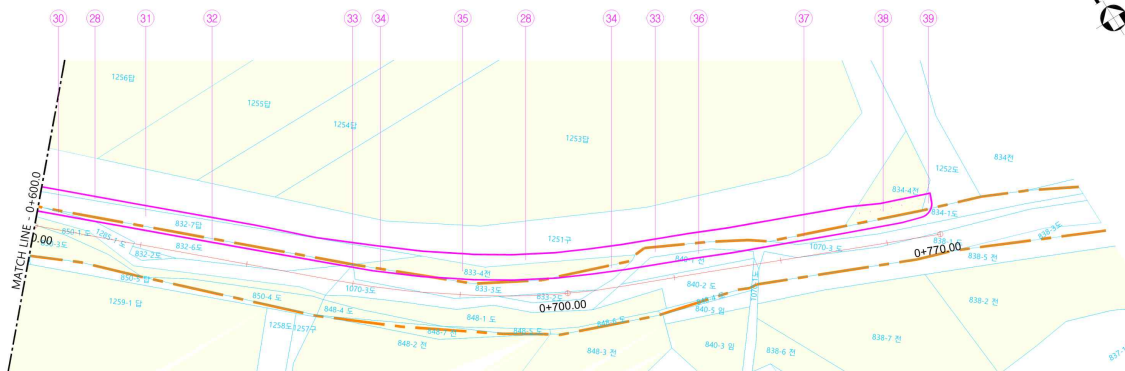
공 사 명	시 행 장	설 계 사	설 계 일자	축 척	조립책임자	분담책임자	자 실 계	도 면 명	도 면 번호
불문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이이엔씨엔지니어링 (주) 이이엔씨엔지니어링	2026. 03	1 : 300 (A1) 1 : 600 (A3)	김민수	임동욱	정한영	용 지 도 (군도) (3)	6.08



용 지 도 (5)

(군도) S = 1 : 300(A1)
S = 1 : 600(A3)

구 분	명 칭	비 고
	도로용도구역(군도)	
	도로용도구역(농어촌)	
	연속지적도	
	관입용지경계	
(0)	용지물대	
	사 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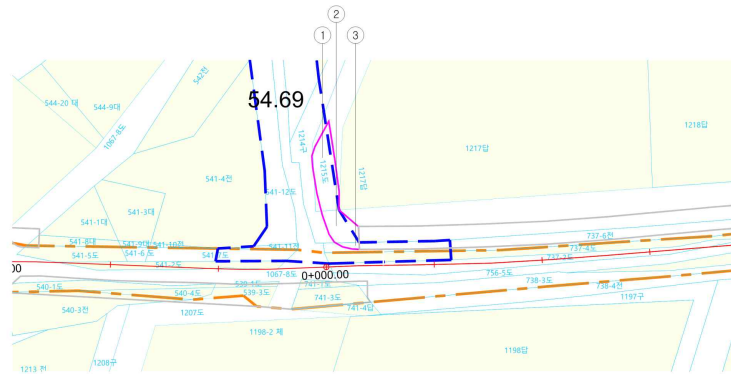


구 분	명 칭	설 계 사	설 계 일자	축 적	과 일 책임자	분 과 책임자	도 면 명	도 면 번호
불문면 두물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인 천 광 복 역 시 군	이이엔씨엔지니어링 (주)	2026. 03	1 : 300 (A1) 1 : 600 (A3)	김민수	임동욱	용 지 도 (군도) (5)	6.10

용 지 도 (1)

(농어촌도로) S = 1 : 300(A1)
S = 1 : 600(A3)

범례		
구분	명칭	비고
	도로용도구역(군도)	
	도로용도구역(농어촌)	
	연속지적도	
	관입용지경계	
	용지물대	
	사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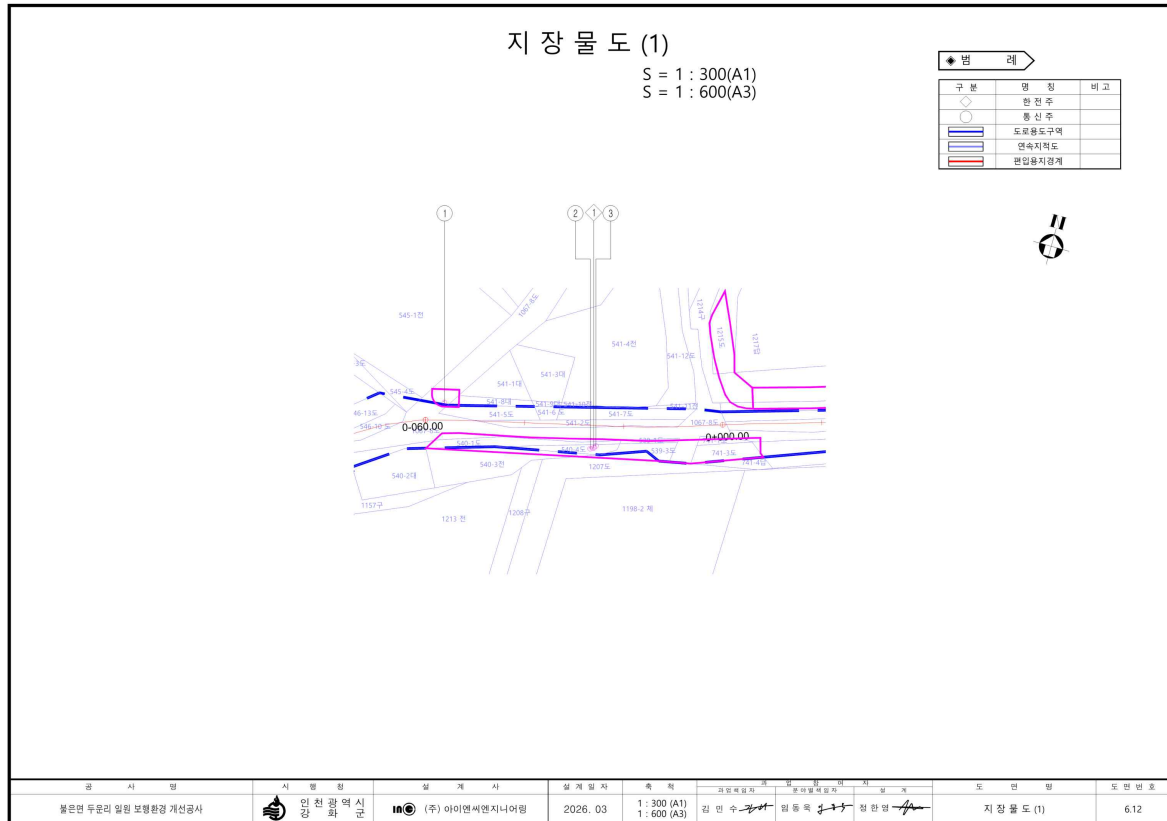
공 사 명	시 행 장	설 계 사	설 계 일자	축 척	조립제일지	분리제일지	자 실 계	도 면 명	도 면 번호
불문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인민청년광역시	IMC (주) 아이앤씨엔지니어링	2026. 03	1 : 300 (A1) 1 : 600 (A3)	김민수	임동욱	정한영	용 지 도 (농어촌도로) (1)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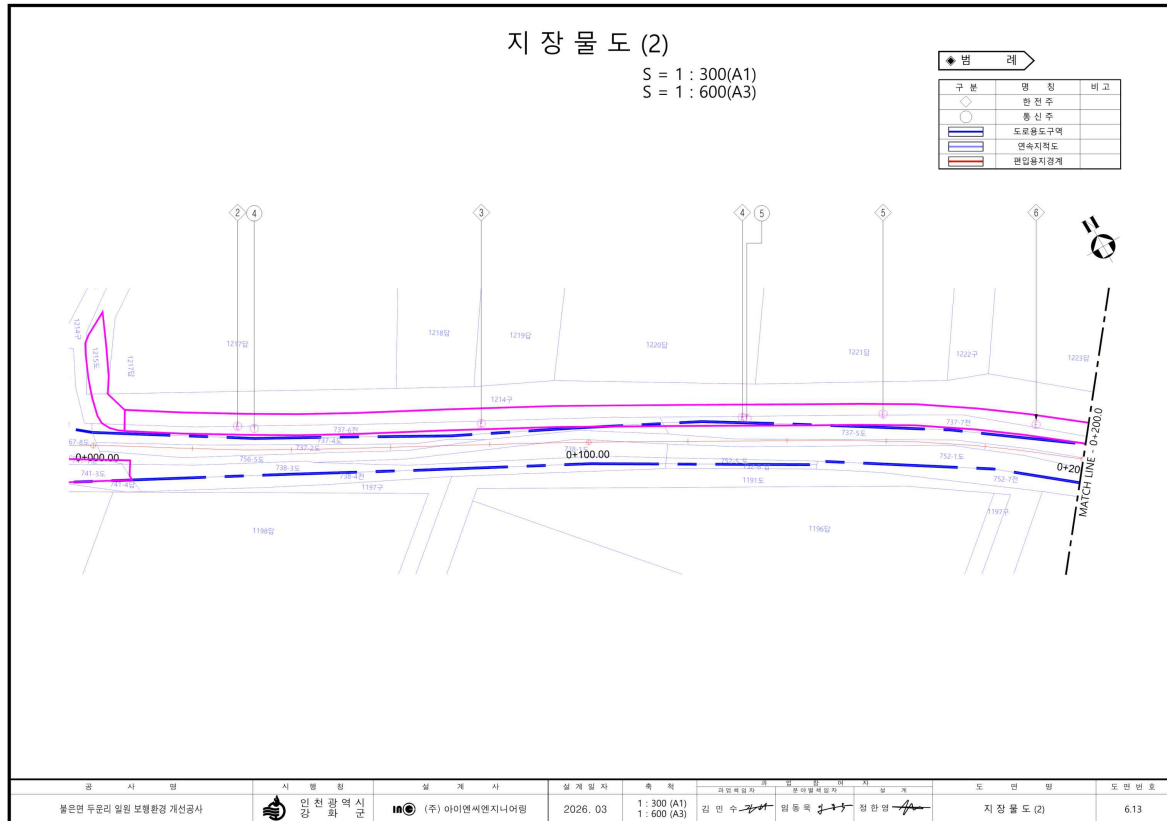
용 지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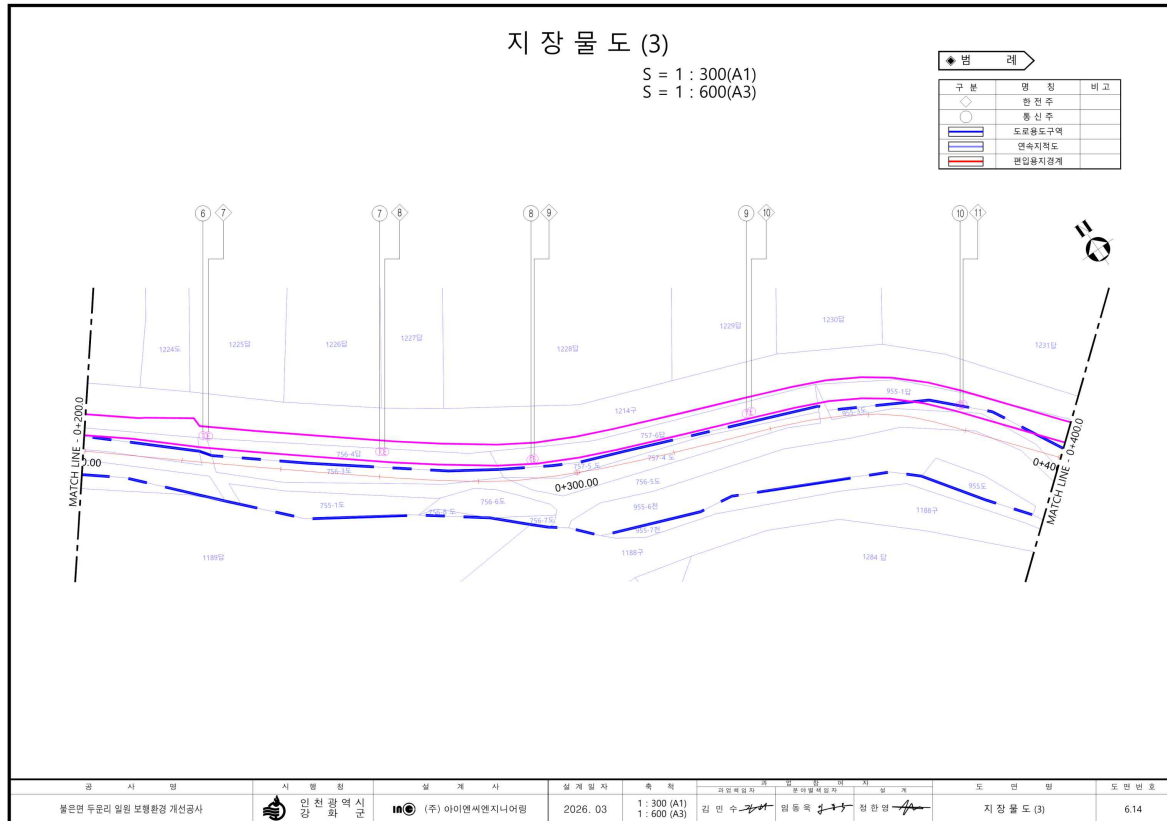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오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 번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관리	
1	두운리	1067-8	도	2,511.0	1067-8	56.0	국	국토해양부				
2	두운리	541-5	도	55.0	541-5	1.0	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3	두운리	541-8	대	27.0	541-13	2.0	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4	두운리	540-1	도	93.0	540-1	62.0	유**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번길 ***, ***등***호				
5	두운리	540-3	천	144.0	540-5	25.0	유**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번길 ***, ***등***호				
6	두운리	540-4	도	25.0	540-4	25.0	유**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번길 ***, ***등***호				
7	두운리	539-3	도	31.0	539-3	31.0	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3/8
							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3/8
							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2/8
8	두운리	1207	도	1,153.0	1207-1	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9	두운리	539-1	도	10.0	539-1	7.0	구**					미등기
10	두운리	741-3	도	40.0	741-3	40.0	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3/8
							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3/8
							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2/8
11	두운리	741-1	도	13.0	741-1	11.0	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12	두운리	756-5	도	1,509.0	756-5	43.0	국	국토해양부				
13	두운리	738-3	도	211.0	738-3	3.0	공	강화군				
14	두운리	1214	구	10,520.0	1214-2	89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14-3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두운리	737-6	천	123.0	737-6	88.0	공	강화군				
16	두운리	737-4	도	197.0	737-4	6.0	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17	두운리	737-5	도	298.0	737-5	19.0	공	강화군				
18	두운리	737-7	천	163.0	737-7	135.0	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두운리 ***				
19	두운리	756-4	담	200.0	756-4	132.0	공	강화군				
20	두운리	757-6	담	242.0	757-6	199.0	공	강화군				
21	두운리	955-1	담	409.0	955-1	302.0	공	강화군				
22	두운리	955-3	도	152.0	955-3	23.0	공	강화군				
23	두운리	955-2	도	52.0	955-2	1.0	공	강화군				
24	두운리	955-5	도	207.0	955-5	74.0	공	강화군				
25	두운리	955-4	담	201.0	955-4	187.0	공	강화군				
26	두운리	955-6	하천	2,149.0	955-6	61.0	국	국토해양부				
27	두운리	858-5	도	117.0	858-5	67.0	공	강화군				
28	두운리	1251	구	2,059.0	1251-1	26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두운리	858-8	하천	52.0	858-8	15.0	국	국토해양부				
30	두운리	1285-1	도	211.0	1285-1	47.0	국	국토해양부				
31	두운리	832-7	담	220.0	832-7	220.0	공	강화군				
32	두운리	832-6	도	160.0	832-6	36.0	공	강화군				
33	두운리	1070-3	도	443.0	1070-3	46.0	국	국토해양부				
34	두운리	833-3	도	142.0	833-3	17.0	공	강화군				
35	두운리	833-4	천	129.0	833-4	122.0	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고농리 ***				
36	두운리	840-1	천	73.0	840-1	23.0	공	강화군				
37	두운리	834-1	도	132.0	834-1	34.0	공	강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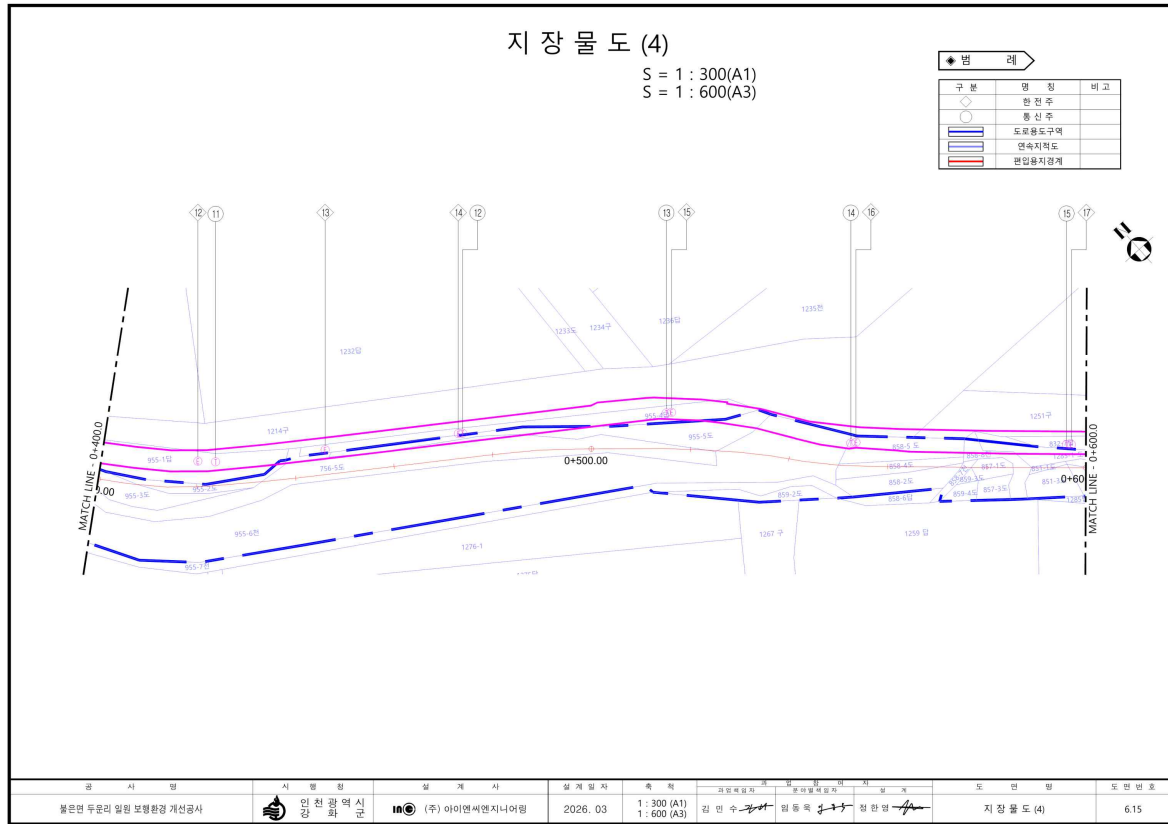
용 지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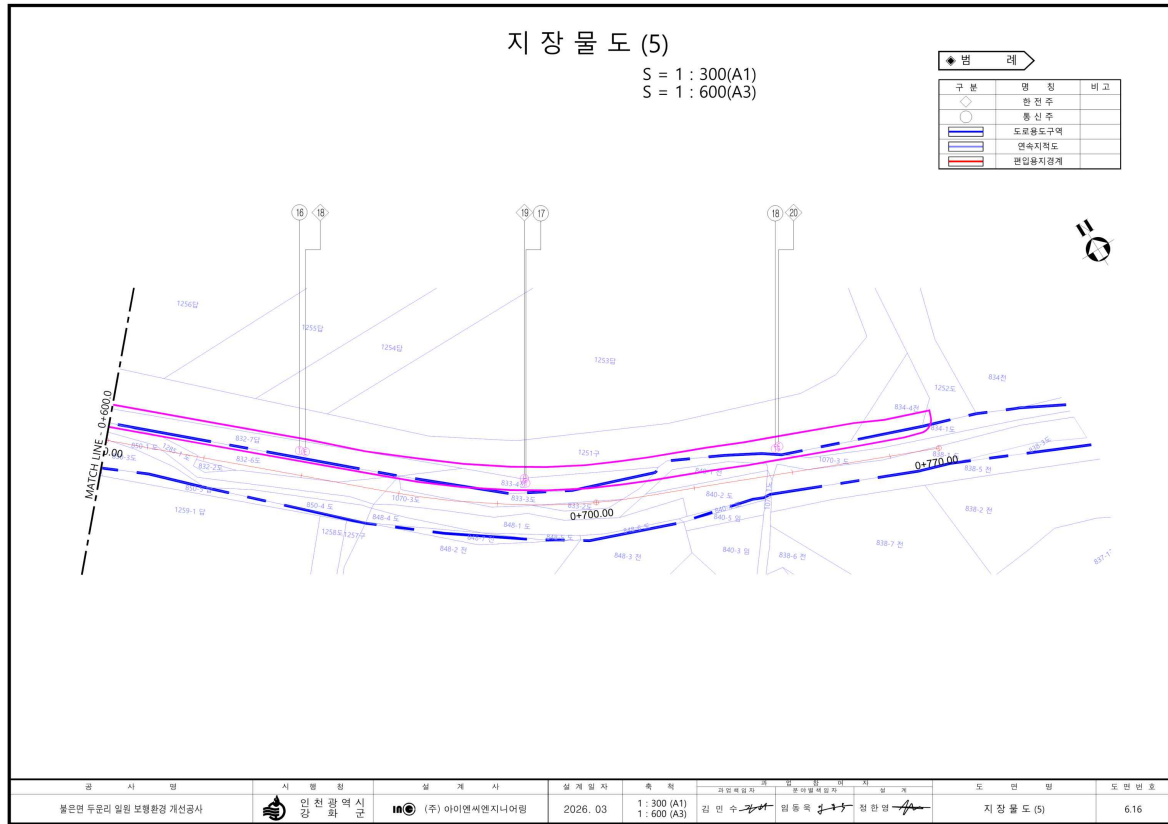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묘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 번 (면입지번)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자의 관리	
38	두문리	834-4	전	135.0	834-6	42.0	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문면 고동리 ***				
39	두문리	1252	도	925.0	1252-1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25,533.0		3,4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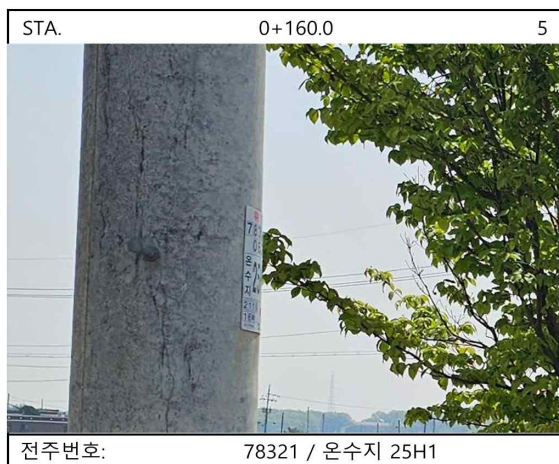
지 장 물 집 계 표

구 분	단 위	수 량	비고
한 전 주	EA	20	
통 신 주	EA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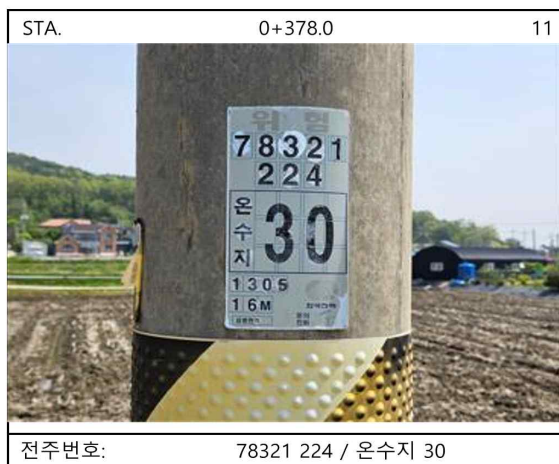
지장물건조서(한전주)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위치		전 주 번 호	수량 (개소)	소 관 청	비고
				STA.	방향				
1	두운리	540-4	도	0-025.9	우	7732H 811 / 온수지 21	1	한국전력공사	16M
2	"	737-6	전	0+029.0	좌	77322 /	1	한국전력공사	
3	"	737-6	전	0+080.0	좌	78321 031 / 온수지 23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4	"	737-7	전	0+131.0	좌	78321 032 / 온수지 24	1	한국전력공사	
5	"	737-7	전	0+160.0	좌	78321 / 온수지 25H1	1	한국전력공사	2110 16M
6	"	737-7	전	0+190.0	좌	7832C 161 / 온수지 25	1	한국전력공사	1110 16M
7	"	756-4	답	0+225.0	좌	78321 131 / 온수지 26	1	한국전력공사	
8	"	756-4	답	0+260.0	좌	78321 121 / 온수지 27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9	"	757-6	답	0+292.0	좌	78321 127 / 온수지 28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10	"	757-6	답	0+337.0	좌	78321 221 / 온수지 29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11	"	955-1	답	0+378.0	좌	78321 224 / 온수지 30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12	"	955-1	답	0+420.0	좌	7832C 431 / 온수지 31	1	한국전력공사	2404 16M
13	"	955-4	답	0+447.0	좌	7832C 531 / 온수지 32H1	1	한국전력공사	2404 16M
14	"	955-4	답	0+474.0	좌	78321 311 / 온수지 32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15	"	955-4	답	0+515.0	좌	78321 312 / 온수지 33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16	"	858-5	도	0+554.0	좌	78321 313 / 온수지 34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17	"	832-7	답	0+595.0	좌	78321 401 / 온수지 35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18	"	832-7	답	0+640.0	좌	78321 402 / 온수지 36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19	"	833-4	전	0+695.0	좌	78321 403 / 온수지 37	1	한국전력공사	1305 16M
20	"	1251	구	0+740.0	좌	78351 501 / 온수지 38	1	한국전력공사	16M
합 계							20		

지장물조사서 (한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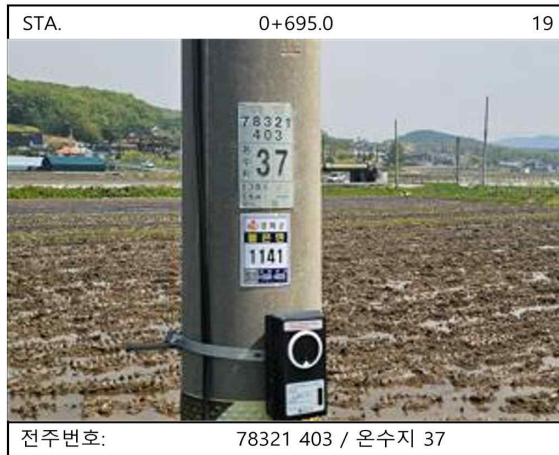
지장물조사서 (한전주)



지장물조사서 (한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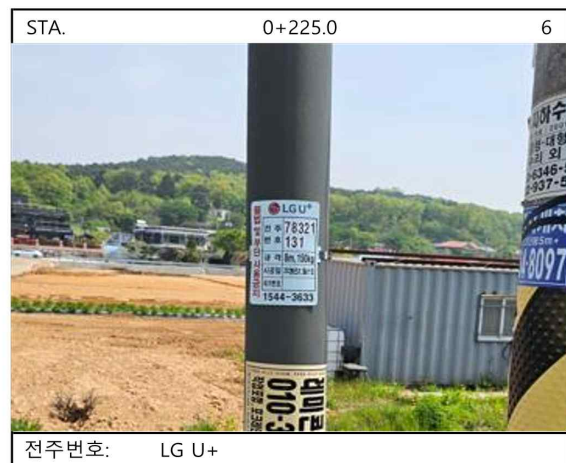
지장물조사서 (한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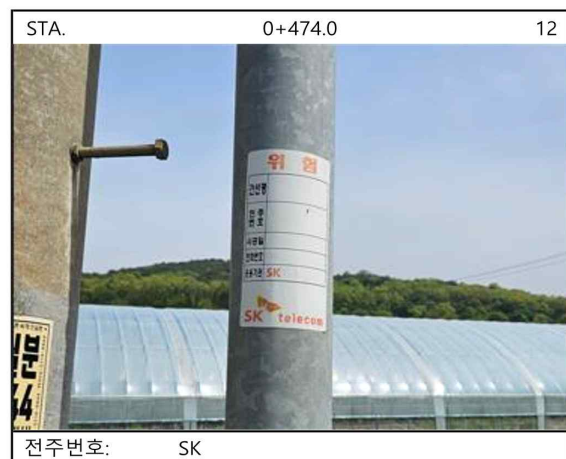
지장물건조서(통신주)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위치		전 주 번 호	수량 (개소)	소 관 청	비고
				STA.	방향				
1	두운리	1067-8	도	0-056.2	좌		1		
2	"	540-4	도	0-026.5	우		1		
3	"	540-4	도	0-025.4	우		1	LG U+	
4	"	737-6	전	0+032.5	좌		1	SK	
5	"	737-7	전	0+131.0	좌		1	SK	
6	"	756-4	답	0+225.0	좌	78321 131 / 8m, 150kg	1	LG U+	
7	"	756-4	답	0+260.0	좌		1	SK	
8	"	757-6	답	0+292.0	좌		1	SK	
9	"	757-6	답	0+337.0	좌		1	SK	
10	"	955-1	답	0+378.0	좌		1	SK	
11	"	955-1	답	0+420.0	좌		1	SK	
12	"	955-4	답	0+474.0	좌		1	SK	
13	"	955-4	답	0+515.0	좌		1	SK	
14	"	858-5	도	0+554.0	좌		1	SK	
15	"	832-7	답	0+595.0	좌		1	SK	
16	"	832-7	답	0+640.0	좌		1	SK	
17	"	833-4	전	0+685.0	좌	783 1 40 / 8m, 150kg	1	LG U+	
18	"	1251	구	0+740.0	좌	78351 501 / 8m, 150kg	1	LG U+	
합 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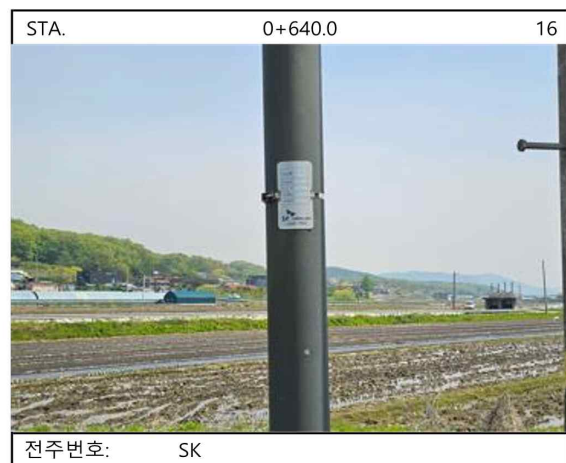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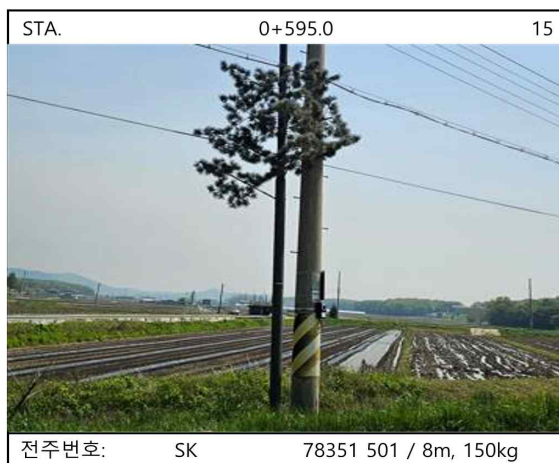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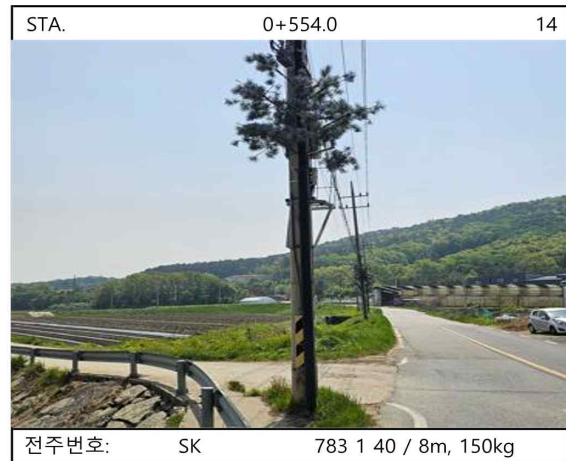
지장물조사서 (통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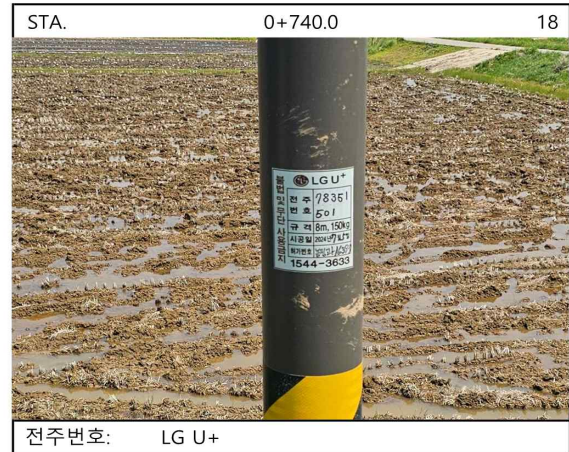
지장물조사서 (통신주)



지장물조사서 (통신주)



지장물조사서 (통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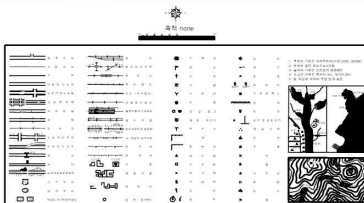
지 형 도 면 고 시 도

도엽번호 : NO.001



변경

범례	
도로구역선(당초)	
도로구역선(변경)	



지정권자 : 강화군청
지정일자 : 2026년 월 일
고시년도 : 2026년 월 일
고시번호 : 강화군 고시 제2026- 호
작성년월일 : 2026년 월 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강화군청

구분	작성 자	검 수 자	확 인 자
소 속		강 화 군 청	강 화 군 청
직 급		주 무 관	팀 장
직 명	-	-	-
성 명		김 지 훈	한 기 열
확인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강화군 고시 제2026 - 179호

도로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불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군도19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4일

강 화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당초	군도	19호선	군도19호선 주문~불음	서도면 불음도리	44,853	서도면 불음도리 945-2	서도면 불음도리 265-2	불음출장소 불음소방서	2.0
변경	군도	19호선	군도19호선 주문~불음	서도면 불음도리	45,351.4	서도면 불음도리 945-2	서도면 불음도리 265-2	불음출장소 불음소방서	2.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해당 도로공사의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따른 노선 지정면적 정리
당초 : 44,853㎡ → 변경: 45,351.4㎡ (증 498.4㎡)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0. 06. 16. ~ 2026. 06. 3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강화군청 건설과(2020.06.16. ~ 사업완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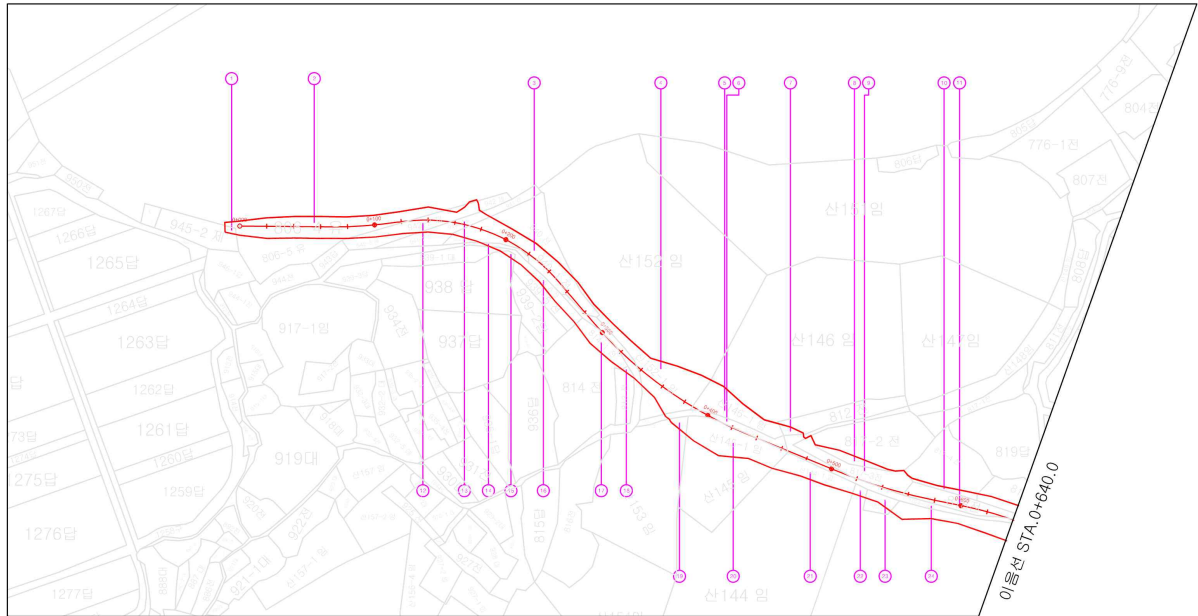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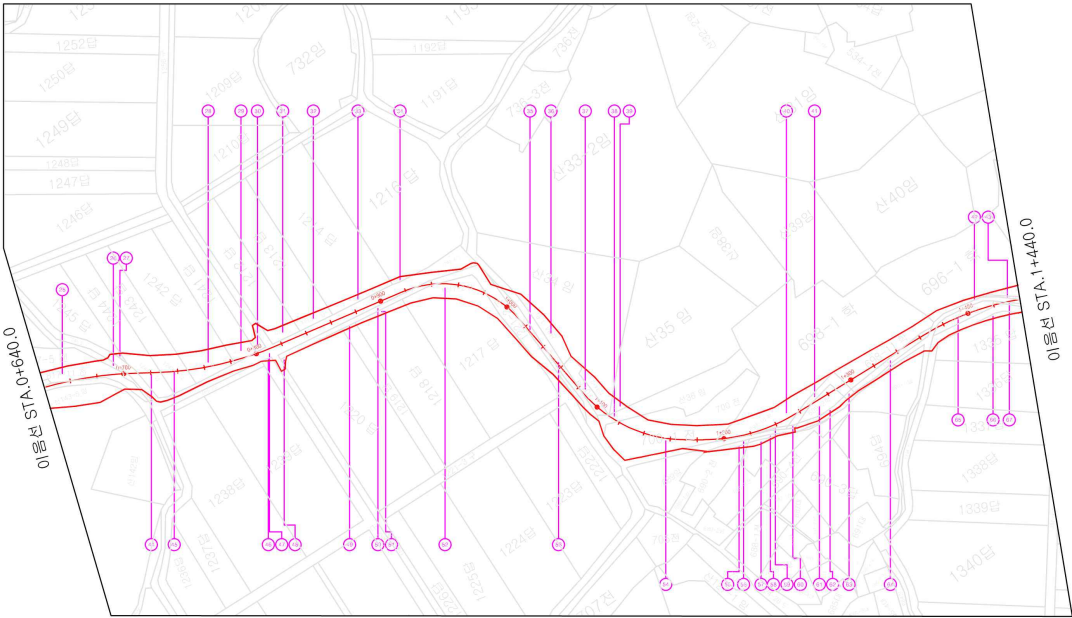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지구계 변동 없음)

지형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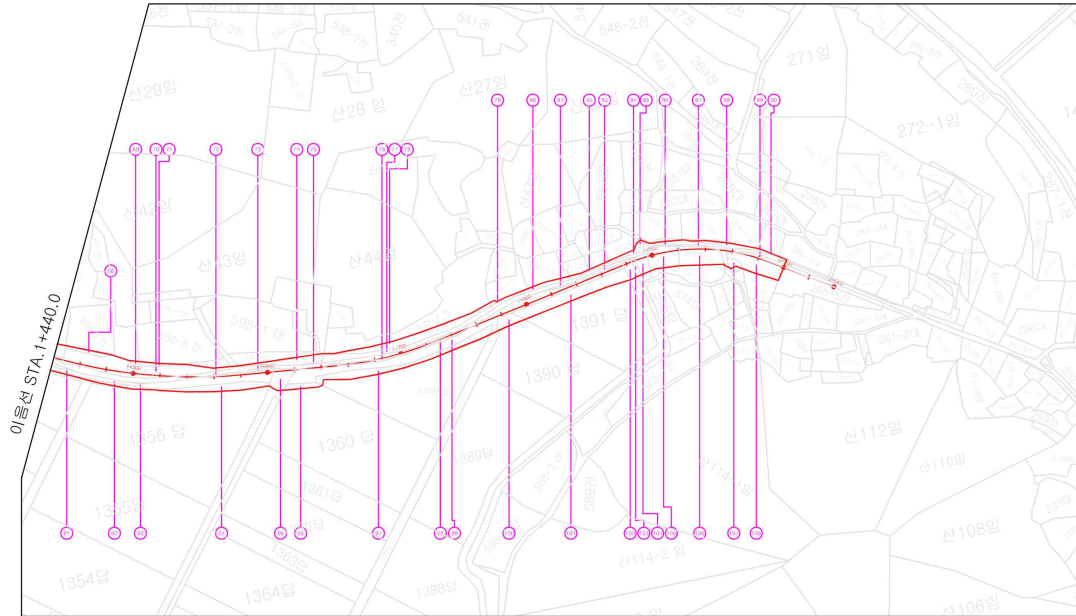
공	시	명	시	행	공	역	회	사	축	적	설	개	일				도	면	영	도	면	번호																					
불용도	관	경	기	반	연	결	영	도	(국도19호선)	건설공		인	천	관	역	시	강	화	교		성	지	아	엔	비	건축사사무소	1 : 1,200	2020. 6.	원	종	구	김	태	준	오	인	택	지	형	도	면	(1)	-

지 형 도 면 (2)



공	시	명	시	원	원	공	역	회	시	속	적	상	계	일	자	도			면	명	도	면	번	호						
보령도	관	공	기	반	면	결	도	로(군도19호선)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지이엔씨건축사사무소	1 : 1,200	2020. 6.	임	종	구	김	태	준	오	인	택	지	형	도	면	(2)	-

지 형 도 면 (3)



공	사	명	시	행	청	공	역	회	사	속	적	상	계	일	차				도	면	영	도	면	번	호							
보령도	관광기	반면	결도	로(군도19호선)	건설공사		인천	광역	시	강화군		삼지이앤씨	건축사사무소	1	:	1,200	2020. 6.	임	종	구	김	태	준	오	민	택	지	형	도	면	(3)	-

공 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 2026-1237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내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강제견인 및 보관 중인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이륜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안에 회수·폐지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안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강 화 군 수

1.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7.(20일간)
2. 강제처리일시: 공고기간 만료 후
3. 강제처리대상 및 강제처리장소: 첨부파일 참조
4.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유의사항

가. 소유자(또는 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 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 됩니다.

※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안에 있는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가압류, 저당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안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도로교통과(☎032-930-3366)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내역

이륜차 등록번호	차명	차대 번호	소유 자 성명	방치 장소	차량사진	견인일	보관장소
서울중랑 카4988	VL125	307339	최*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1074-3 도로변		2023.9.25.	인천 서구 원당대로301번 길 46(왕길동) (주)서인천폐차 사업소 (032-565-9990)